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김진억 수석담당역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운영해온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고자 법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함. 중도인출 요건이 미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는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거나 중도대출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에 퇴직연금 긴급인출 및 담보대출 허용을 포함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미국 퇴직연금의 인출제도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함
 -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부양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긴급인출하는 것을 허용함¹⁾
 - CARES법은 가계 주요자산인 퇴직연금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가계의 긴급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함
 - 2019년 3월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자산은 29.1조 달러로, 이는 가계금융자산의 33%를 차지함²⁾
-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적립단계에서 다양한 인출 수단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 소득을 위한 적립금 보호를 위해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의 조기인출에는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음
 - 미국 퇴직연금 인출제도에는 적격분할(Qualified Distributions), 중도인출(Early Withdrawal), 긴급인출(Hardship Distribution), 담보대출(Plan Loan), 최소필수분할(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등이 있음

1) 김진억(2020. 4. 13), 「미국, 코로나19 관련 퇴직연금 긴급 인출 허용」, 『KIRI 리포트』

2) NAPA(2019. 6. 27), "Retirement Assets Top \$29 Trillion, While Plan Fees Continue Downward Trend"

- 적격분할은 59.5세 이후 수령단계에서 벌금 없이 소득세를 납부하며, 인출할 수 있는 퇴직연금임
- 중도인출, 긴급인출, 담보대출 등은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단계에서 조기 인출 및 대출하여 각 제도의 특성과 가입자의 조기 자금 수요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출·대출 기준이 엄격하고 고용주의 허가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국세청의 심사가 필요함(〈표 1〉 참조)
- 최소필수분할(RMD)는 퇴직연금 수령단계 이후 전통적 개인퇴직계좌(IRA)에 적용되는 강제 인출규정으로 72세 이전에 인출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표 1〉 미국, 퇴직연금제별 자금 인출 규정

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401(k))	개인퇴직계좌(전통적 IRA)
중도인출 (Early 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5세 이전 가능, 소득세, 10% 벌금 부과 - 벌금 면제요건: 영구장애, 실직(55세 이상), 이혼(관계 명령에 따른 중도인출), 조정총소득의 7.5% 이상 미상환 의료비 등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5세 이전 가능, 소득세, 10% 벌금 부과 - 벌금 면제요건: 401(k)와 공통요건 외에 적격 고등교육비, 실직 시 건강보험료 지출, 첫 주택 구입·건축·재건축(평생 만 달러)
긴급인출 (Hardship 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5세 이전 가능, 필요성, 필요 금액 등 긴급성 기준 설정, 고용주 엄격한 허가 필요 - 긴급성 기준(의료비, 장례비 등)을 고용주 재량에 위임되나, 국세청은 벌금부과 여부, 인출금액 등을 재심사 - 소득세 납부, 벌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5세 이전 가능 - 의료관련 긴급자금(건강보험 미가입 시 의료비 또는 1년간 미보장 의료비 등) - 비자발적 실직상태로 12주 연속 실업수당 수령 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정신 또는 육체 장애 시,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 고등교육비 지출 - 소득세 납부, 벌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분할금(CRD) : CARES법에 의해 코로나19 피해 시 10만 달러까지 긴급인출, 제도관리자의 신청기준에 따라 ①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입하거나 ② 비과세로 인출금을 3년 내 일시 또는 분할 재적립 가능, 벌금 면제 	
담보대출 (plan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허가 필요 - 소득세, 벌금이 없으나 5년 이내 상환해야 함 - 적립금의 50% 또는 5만 달러 이하 - 실직 또는 퇴직 시 90일 이내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 중도인출로 간주 소득세와 벌금 부과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법에 의해 2020. 3. 27일부터 6개월간 대출금액을 Min(10만 달러, 적립금 100%)으로 신청 가능해지고 2020년은 상환기간에서 제외됨 	- 해당 없음

주: 대표적인 퇴직연금만 비교함
 자료: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고자 CARES법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함

- 긴급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 가입자는 2020년 중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 받거나 코로나19로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 또는 작업 불능(격리 등)인 경우임
 - 긴급인출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못 받는 전통적 IRA 가입자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³⁾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의 2배까지 한시적으로(2020. 3. 27일부터 180일간) 증액되며, 2020년이 상환기간에서 제외되어 최대 6년간 상환 가능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 말 적립금이 221조 2,000억 원⁴⁾이 되었으며,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737.7조 원)의 30.0% 수준으로 가입자당 퇴직연금 적립금이 3,529만 원에 달함

- 퇴직연금 가입자당 적립액이 가계(가구주)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7%, 2018년 9.8%, 2019년 10.0%(추정치)으로 최근 매년 상승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당 퇴직연금 추이



〈그림 2〉 가계(가구주) 순자산 추이



주: 〈그림 1〉 2019년 수치는 가입자는 2019년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말 자료로써 그 비중은 2019년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KOSIS); 금융감독원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으나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표 2) 참조

- 현 퇴직급여 보장법상 조기인출의 경우는 중도인출·중간정산, 담보대출로 한정되며, 긴급인출은 규정된 것이 없음
- 중도인출 시 벌금이 없으며 다양한 사유를 인정하므로 퇴직연금 적립의 강제성이 미국에 비해 낮음
- 코로나19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 받기가 모호하며,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천재지변과도 다르기에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움

3) Forbes(2020. 4. 10), "5 Ways The CARES Act Impacts Retirement Planning"

4)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6),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 원 돌파"

〈표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금 인출 규정

구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IRP	한도
중도인출	- 해당 없음	-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6개월 이상),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지출 - 기타 천재지변 등(고용노동부 고시) -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부과(단, 부득이한 사유 시 연금소득세 부과)	- 해당 없음	- 적립금 100% 이내(단,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중도인출한도규정 미설정
긴급인출	- 해당 없음			
담보대출	-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6개월 이상),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고용노동부 고시)			- 적립금 50% 이내(단,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주: 퇴직금제도는 비교에서 제외함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기 극복 이후 퇴직연금 자산의 재적립⁵⁾을 유도할 수도 있음
 - 미국은 CARES법 제정을 통한 긴급인출 허용에 있어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중도인출의 경우 재적립할 경우 소득세와 벌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담보대출을 권장함으로써 노후자산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 적립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인출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중도인출 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긴급인출은 엄격한 기준과 고용주의 허가 등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노후자산 감소를 억제함 [kiri](#)

5) 『KIRI 고령화리뷰』, 제19호, 포커스(2018. 3. 5)에 따르면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